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49

발의연월일: 2021. 3. 17.

발 의 자 : 권성동・김선교・김용판

서범수 · 서병수 · 윤두현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이 영·한무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소요되어 해조류 등의 생육주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생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
	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u>다.</u>
<u>②</u> ~ <u>④</u> (생 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